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7 선고 2013가단503182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변론 종결 2014. 8. 26.

판결 선고 2015. 1. 27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41,790,453원과 그 중 40,955,913원에 대하여 2012. 7. 20.부터 2013. 5. 4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1. 3. 23.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11. 3. 12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2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.
다. 피고 C는 피고 A에게 별지 3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.
3. 별지 기재 제2 내지 14 각 부동산에 관하여

- 가. 피고 A과 피고 D, 피고 E 사이의 2011. 9. 20. 매매계약을 41,790,453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
- 나. 피고 D, 피고 E는 원고에게 각 41,790,4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0. 4. 16. 피고 A과 신용보증한도 5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5. 4. 16.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,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로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나. 피고 A은 2011. 5. 23. 위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했고, 원고는 2012. 7. 20. 위 은행에 41,648,14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, 같은 날 692,23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40,955,913원이다.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834,540원을 지출하였고,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%다.

다. 피고 A은 위 신용사고 발생 직전인 2011. 3. 23. 피고 B,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제1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1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각 2011. 3. 23. 및 2011. 3. 12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, 신용사고 발생 이후인 2011. 9. 20. 피고 D,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제2 내지 14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2 내지 14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피고 A은 위 다.항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(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5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).

마.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, 2014. 1. 27. 각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B은 60,000,000원, 피고 C는 64,826,0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. 그 중 피고 C의 근저당권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장, 군산세무서, 서초세무서장 등의 교부권자와 함께 안분배당 된 것이다.

바. 별지 기재 제2 내지 14 각 부동산은 피고 D,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2011. 9. 20. 그 전에 마쳐져 있던 덕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, 같은 날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49,7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덕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A에 대하여

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41,790,453원(원금 40,955,913원 + 채권보전비용 834,540원)과 그 중 원금 40,955,91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. 7. 20.부터 이 사건 최종적인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3. 5. 4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

채무자인 피고 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1. 3. 23.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11. 3. 12.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,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2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

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며, 피고 C는 피고 A에게 별지 3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(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, 2013. 2. 15. 선고 2012다34238 판결), 앞에서 본 배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초남부지사장, 군산세무서, 서초세무서장 등의 교부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, 이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.), ② 이 사건 제2 내지 14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D, 피고 E 사이의 2011. 9. 20. 매매계약은 41,790,453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)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, 피고 E는 원고에게 각 41,790,4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, C, D, E의 항변에 관한 판단

① 피고 B은, 피고 A이 사촌동생인 G으로부터 2009. 2. 12.부터 2010. 1. 29.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60,400,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 B에게 2010. 6. 3. 30,000,000원을 G의 처 H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차액조로 다시 G의 자인 I에게 2011. 7. 26. 9,300,000원, 자인 J에게 2011. 12. 25. 9,600,000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것이므로,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

② 피고 C는, 2009. 4. 5.부터 2010. 7. 26.까지 12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2개월 계속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

③ 피고 D, 피고 E는, 이 사건 제2 내지 14 각 부동산이 원래 피고 A의 형인 K 소유였는데 K의 신용이 나빠져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피고 A조차 신용이 나빠지자 이번에는 K의 처인 피고 D, 누나인 피고 E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,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명의신탁의 회복일 뿐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.

그러나 피고 B,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

해당한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)는 점에서 달리 위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.

피고 D, 피고 E의 위 주장 또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(올라 제7 내지 11호증 등)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.

판사신진화

별지